

안전인증소식

# [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Question LED형광등의 규제 및 안전인증 관련 문의

2010년 부터 직관형 형광등 대체용 LED형광등(G13 Base)을 제조,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 되어진 LED형광등(G13 Base)은 철거를 해야되는지와 SMPS 외장형 LED형광등(G13 Base)도 제조·유통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의하신 LED램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예에 따라 '10.1.1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제조, 설치된 제품은 상기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교류 50V 이상 1,000V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AC/DC 50V 미만에서 동작하는 컨버터외장형 LED램프는 동 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제품을 사용하는 LED등기구 (AC 50V이상 1000V 미만 전원 사용)는 안전인증대상이며 직관형 형광램프 전용소켓인 G13 소켓을 사용하면 국제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안전인증대상 확인 관련 문의

G-9 램프를 사용하는 조명등기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220V용 할로겐램프(G9베이스 사용)는 '09.1.1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해당되어 '10.1.1부터 자율안전확인을 받으셔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며, 동 제품을 사용하는 등기구는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어떻게 조치 받을수 있나요?

시판품조사관련 내용 중,

○ (주)XX 안전인증번호 XX XXXXX-3001

○ 모델명 P00-000

☞ 부적합 내용

• 이상온전: 500mm에서 70K이하(기준)

• 측정값: 139K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제품을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조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기술표준원에서는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제품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인증받을때와 동일한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제품의 경우 난로의 온도가 500mm거리에서 안전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어 경결함으로 적발되어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을 조치 받으시려면 제조사에 연락하여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의 KS심사기준에 대한 문의

현재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KS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S C 7651의 인증심사기준 공정관리 중 에이징 공정 검사 및 관리항목에서 점등상태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정 중 점등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만 수행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A**nswer KS C 7651의 인증심사기준 공정관리 중 에이징은 램프의 점등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